

##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

2018. 04. 01 최초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교법인 청운학원 정관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 제20조의5 및 대학평의회 규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추천위원회는 법인의 요청에 따라 개방이사와 추천감사(이하 “개방임원”이라 한다) 선임대상자를 추천한다.

**제3조(구성 및 임기)** ①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성단위에서 추천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
2.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

②추천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개방임원 선임대상자 추천을 마친 날까지로 한다.

**제4조(위원장 등)** ①추천위원회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추천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
②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.

**제5조(회의 소집)** ①법인의 개방임원 선임대상자 추천 요청이 있거나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소집한다.

②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.

④추천위원회 회의 소집 시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추천위원회에 공지한다.

**제6조(개방이사 추천)** 법인으로부터 개방임원 선임대상자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개방이사의 경우 대상인원의 2배수, 추천감사의 경우 1배수를 법인에 추천한다.

**제7조(비밀유지)** 추천위원회 위원은 추천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**제8조(담당부서)** 개방이사추천위원회와 관련된 사무는 사무분장 규정에서 정한 부서에서 담당한다.

**제9조(준용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, 사립학교법 시행령, 학교법인 청운학원 정관 및 대전보건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.

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